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405호 2022년 8월 19일(금)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2

공 고

○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 3

입법예고

○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입법예고 ····· 4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고시 제2022 - 8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속 초 시 장

1. 사업명칭 : 속초시 금호동 617-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 영랑공원개발㈜ 대표 박재현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78, 502호(고운동, 세종스마트큐브)
3.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17-21번지 외 31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분양주택	○ 대지면적 : 39,970㎡ ○ 건축면적 : 6,874.72㎡ ○ 연 면 적 : 181,160.51㎡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층 수 : 지하4층 / 지상 25~33층 ○ 세 대 수 : 1,024세대	92,400,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23. 01. 01. ~ 2026. 01. 01.(예정)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7. 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033-639-277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하게 합니다.

속초시공고 제2022 -799호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기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고지정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 금고의수 : 단일금고

○ 약정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4년)

2022년 8월 18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고 제2022-804호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제정이유

속초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 제3조)

나. 관리체계 및 실천계획 수립 등(안 제4조~제6조)

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라. 공개 및 평가 결과의 환류(안 제8조~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기획예산과(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33-639-2211, FAX 033-639-2106

3) 전자문서 : starkr@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기획예산과 기획팀(033-639-2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항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공약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공약사항 평가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실천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

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가 공약사항 변경을 접수한 때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시민참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총괄부서의 시민참여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속초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추진·평가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약이 성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⑥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평가단은 속초시 민간 자문기구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추진상황 등을 속초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속초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